

20·30대도 '과로사' 속출

대부분 스트레스 많은 사무직...구제법 없어 '발동동'

별다른 사전증상없이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는 과로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의 과로사 상담기관으로 문을 열어 23일로 석달째를 맞은 서울 구로2동의 노동과 건강연구소 과로사 상담센터(소장 이경우 변호사)에는 과로로 아버지나 남편을 잃은 유족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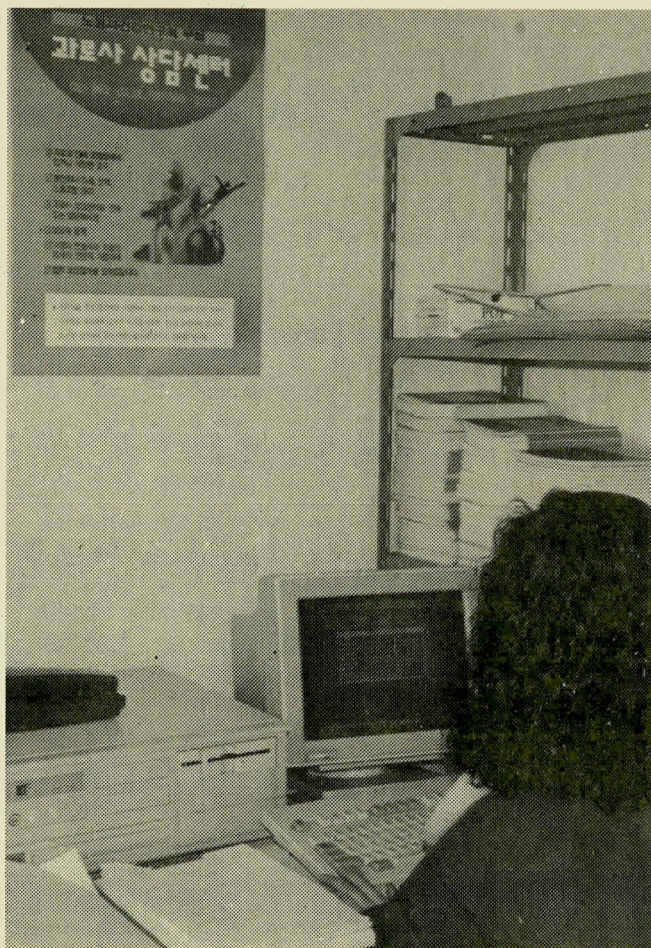
8명의 의사와 변호사 10명이 자문에 응하고 있는 이 상담센터에 지금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60여 건이다. 장지혜 상담간사는 "과로사 하면 전에는 주로 40~50대였으나 요즘은 20~30대로 나이가 점점 내려오고, 생산직보다 사무직이나 관리직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층에 희생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한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로사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으로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장애나 사망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다 과로사 처리에 대한 법률적·의학적 미비점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울산에 사는 건설현장의 한 중간 관리자(62)는 2~3개월씩 임금이 체불된 데다 공사기한을 맞추느라 집에까지 작업일보를 가져와서 쓰는 등 무리를 하던 끝에 지난 추석 때 별안간 쓰러졌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지금도 뇌경색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평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무리를 할 경우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 환자는 과로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아픈 데라고는 없는 건장한 사람이었다.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국내 업체에 스카우트되어 온 한 사무직 노동자(29)도 갑자기 몰아닥친 일을 견디지 못하고 석달 만에 목숨을 잃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자가용 운전기

'과로사 상담센터'를 통해본 실태



최근에는 과로사의 피해 연령이 20~30대로 낮아지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무직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다. 사진은 문을 연 지 90일이 된 서울 구로2동의 과로사 상담센터 사무실.

사(35)도 새벽 5시30분 집을 나서 서울 압구정동의 상사집과 수원의 회사를 오가는 과중한 업무 끝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과로사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사무직과 언론계, 일부 생산직 노동자들 사이에 지나친 업무로 과로사 희생자가 늘는 데도 이들을 구제할 법적 근거는 현재 노동부의 내부지침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12조밖에 없다. 그나마

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의 종류를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에 한정해 위암이나 폐암, 간경화, 신부전증 같은 병은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폐암과 중풍의 경우 직장에서의 과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추세에 있다.

과로사의 발생경로나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 등 의학적 연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다. 과로사 상담센터의 자문의사로 일하는 가정의학 전문의 조진씨는 "과로가 사람 몸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정도를 재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과 돌연사에 대한 한국적 역학조사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노동기준법이나 노동재해보험법 등에 과로로 인한 직업상의 장애와 그의 보상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8년 10월과 91년 10월 각각 '과로사 변호사연락회의'와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모임'이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가 카테콜라민이나 부신피질 자극호르몬을 필요 이상으로 분비시켜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동맥경화가 와서 돌연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의 한 자료는 우리나라 과로사의 뇌질환 대 심장질환 비율이 90년 58.5-29.8에서 91년에는 51.7-31.8, 92년엔 32.0-41.2 등으로 뇌질환이 줄어들고 심장질환이 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과로사는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 하루 7~8시간의 잠, 잘 재워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업무상 과로로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기를 원할 때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확인서, 작업내용과 과로사 경위에 대한 동료의 진술서 병력진술서나 회사의 건강검진 결과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 의사 소견서와 시체 검안서, 부검 의견서 등을 준비해서 노동부에서 요양 신청서를 내거나 법원에 유족급여 신청서를 내야 한다. 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평균급여의 70% 범위에서 치료비가 나오며, 유족급여는 대개 평균임금의 1천3백일분에 해당하는 1억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